

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2월 5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,
- 나. 모자보건법 제3조(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) 및 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,
- 다. '21. 4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사업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
- 나. 위탁내용
- 산전·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
 - 임산부·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 - 임산부·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
- 다. 민간위탁기관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마. 민간위탁 필요성

-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,
-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,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

바. 위탁기간 : '21. 05. 01. ~ '23. 12. 31.(2년 8개월)

사. 소요예산 : 200백만원('21년)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자. 민간위탁 시설개요 : 사무형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내 사무실, 회의실 등 사용

차.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제1항 및 제2항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)

-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·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(의사·한의사·조산사·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제3호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'18년 ~ '20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성과보고서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이복남 (☎ 2133-7577)